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로 변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변경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변경

다.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

라. 법명 띠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

행령”으로

-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 기금”으로
- “장기예치기금액”을 “적립금”으로
-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

3. 개정근거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마.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09. 10. 15. ~ 11. 04.(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9. 11. 05)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라.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를 “(이하 “적립금”이라 한다)”로, “(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를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

라 한다)"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적립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 본문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각각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퇴거명령"을 "퇴거 명령"으로,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대장"을 "장부"로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

제10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사회복지과장

3. 토목과장

4. 치수방재과장

5. 그 밖에 기금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u> <u>운용·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u> <u>운용·관리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기금의 조성)</u>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생 략) 3. 기타 잡수입 등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u>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 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기금의 조성)</u>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잡수입 등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u>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 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p>

<p><u>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적립금의 예치·관리) 적립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당해년도사용기금액</u>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u>당해년도사용기금액</u>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p>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응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응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응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응자기금 규모와 응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응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하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응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응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응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응자기금 규모와 응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응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하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p>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u>건설교통국장</u> 2. 기금출납원 : <u>치수방재과장</u>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u>지방 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u>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u>대장을</u>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위원회는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치수방재과 기금</p>	<p>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u>」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u>장부</u>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2. 사회복지과장 3. 토목과장 4. 치수방재과장 5. 그 밖에 기금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u>1명</u>을 두되, 치수방재과 기금</p>
---	--

<p>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u>의한</u>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u>다음연도</u>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u>연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구청장은 <u>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u>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p> <p>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기회의는 <u>다음 연도</u>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u>연 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구청장은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

<p>4. <u>기타</u>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p> <p>③ 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u>매 회계연도마다</u>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4. <u>그 밖에</u>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p> <p>③ 구청장은 <u>제1항에 따른</u>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u>회계연도마다</u>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	--